

# GAAS : 회계감사 관련 최신 동향

**증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, 주요 지적 사례는 회계 실무에 활용되도록 공개하였습니다. (금융감독원)**

## 1. 개요

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을 심사·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증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

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·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있음

금번 공개 내용은 IPO 예정기업 등의 매출 부풀리기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,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 다양한 지적 사례를 포함함

## 2. 주요 내용

### (1) 심사·감리 실적

**(현황)**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('22~'24년) 총 458 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·감리를 실시

- 심사·감리 결과, 증선위 및 금융위 의결에 따라 52 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, 22 사를 검찰고발하는 등 총 214 사가 제재조치 되었음.

**(IPO 기업에 대한 적시 조치)**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법인을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오고 있으며,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

-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(22 사) 중 증선위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 개사는 모두 상장 유예
- 그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되도록 함

**(재무적 위험·사회적 물의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)**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(31 개사)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(12 개사(\*))을 심사·감리 대상으로 선정

(\*)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, 횡령·배임 발생기업, 무자본 M&A 기업 등

- 심사·감리가 완료된 36 사 중 17 사에 대해 조치(지적률 47.2%)가 부과되었으며, 이 중 7 건은 중조치(중조치 비율 41.2%)되는 등 부정적발 기능이 강화됨

## (2) 심사·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

금융감독원은 '11년 이후 심사·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 왔으며, '24년부터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

- 현재까지 '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 사를 포함하여 총 182 사의 사례를 공개
- '24년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·매출원가 허위계상(4 사)이었으며, 주석 미기재 2 사, 투자주식 과대계상 1 사,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·부채 관련 7 사로 구성

## (3) 주요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

**(IPO 예정기업)** IPO를 목적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한 기업에 대하여 회사·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,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조치(고의위반)

- (지적내용)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의 조작으로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을 계상하였고,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
- (유의사항) 회사는 외부감사 방해행위가 "위법동기 고의 판단"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고,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가능한 점에 유의

**(현장조사)**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분식회계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인 (고의위반)

- (지적내용) 금감원은 현장조사로 별도 장소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적발하였고, 허위매출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등을 지적
- (유의사항) 회사가 허위증빙 등을 마련해 놓더라도 금감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, 이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

**(한계기업)**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한계기업에 대하여 거래소 통보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

- (지적내용)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시켜 거래의 실질은 자금 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,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매출 등을 인식하였고,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
- (유의사항)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되어 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

**(과징금)**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하여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(161 억원)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

- (지적내용)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을 통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,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
- (유의사항) 회사에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(회계위반 관련 과징금 회사 161 억원(역대 최대))

**(테마심사)** 회계 위반 예방을 위한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고, 경미한 위반은 수정공시 권고 이행시 금감원장 경조치로 심사 종결

- (지적내용) 재무제표에 풋·콜옵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평가손실 과소계상
- (유의사항) 사업결합시 비지배지분 관련 옵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내용, 성격, 관련 의무 등을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, 특히, 옵션 행사 유예 등 의 구두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를 인식해야 함

한편,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·감리 지적사례를 연 2회 공개하고 있으며, 이번에도 최근 지적사례 14 건을 공개하였습니다.

-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IPO 예정기업 등의 매출 부풀리기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,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 다양한 지적 사례를 포함함

### 3. 감리절차 개선 및 향후계획

감리 조사기한(1년)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, 그 결과 모든 감리건의 내부조사를 1년 이내에 완료하여 수검회사의 부담을 최소화

감리결과 조치대상자에게 조치의 구체적 사유를 상세히 통지함으로써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, 조치 수용성을 제고

- 감리 결과 예상 조치 통지(조치사전통지서) 시, 조치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감리집행기관의 판단, 적용된 양형기준(가중감경 사유 포함) 등을 알 수 있도록 통지서 개선

피조치자가 종전보다 앞당겨진 시점에 문답서를 열람하고, 복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피조치자의 방어권 강화

- 금융위의 외감규정 등 개정('22.9.29.)에 따라 피조치자의 문답서 열람 시기를 2 주 이상 앞당기고, 복사를 허용

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매년 유관기관(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)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·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(\*)할 예정

(\*) 회계심사·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fss.or.kr)-업무자료-회계-회계감리-심사·감리지적사례

##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(금융감독원)

### 1. 개요

**(외부감사 방해)**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, 복사,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·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

-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

**(감리 방해)**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수행을 거부 · 방해 · 기피(\*)하는 행위로서,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

출 또는 출석 · 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, 허위자료 제출, 허위 진술 등의 행위를 의미

(\*)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제출한 경우도 자료제출 기피에 해당(서울고법 2008 누 16614)

- 감리를 방해한 회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, 최소 고의<sup>II</sup>단계 상당의 기본조치 및 과징금(외부감사법·자본시장법) 가중 등의 행정조치

### 2. 조치 사례

#### (1) 회사의 감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

**(허위자료 제출)** 금감원의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 제출

- A사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 0.7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통보 대신 검찰고발 조치

**(자료제출 거부)**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B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진행률 추정과 관련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

- B사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35.7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회계위반 동기가 중과실임에도 검찰통보 조치 추가

**(자료 지연제출)** 금감원의 혐의사항 관련 회계자료 및 내부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요구에 대해 C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(자료제출 거부 조치 포함) 수령 이후 일부자료 제출

- C사의 자료 지연제출에 대하여 2.2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감리 방해의 주도적 역할을 한現임원을 검찰통보 대상에 추가

## (2)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

**(허위자료 제출)**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D 사는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손상이 슈가 발생한 재고자산(S 제품)을 외국법인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증빙을 위조하고, 납품한 S 제품을 해당 거래처의 특수관계자를 경유하여 재매입한 후 다른 용도의 새로운 재고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재된 품목명을 변경한 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

-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고발

**(허위매출 관련 재고자산 은폐)**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E 사는 허위 매출품의서,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

-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고발

## 3. 향후계획

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자료제출 거부·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

## 7.22 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(금융위원회)

### 1. 개요

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·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'25.1.21. 공포, 이하 '자본시장법') 및 하위규정이 '25.7.22.(화)부터 시행

- 시행일 이후 ①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(예: 신규 상장법인) 또는 ②사모 전환사채, 신주인 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(이하 '사모 전환사채 등')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

### 2. 내용

#### (1)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·반기보고서 공시 신설

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'25.7.22.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하여,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 일 이내(정기 분기·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)에 공시하여야 함

-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(미공시)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(과징금,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)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

#### (2)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 개선

'25.7.22.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함

- 제출기간 내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(미공시)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(과징금,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)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

감사위원의 임기, 감사계약 체결 주기 등으로 즉시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, 정관변경이나 확약서 제출 등 대체수단(\*)을 허용하되 대체수단 제출 후 미이행시 유예결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

(\*) 예시: 회사의 정관 및 내규,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장의 확약서 등

주기적 지정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「회계·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」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(\*) 경우 제척·회피·기피 의무, 심의 종료시까지 신청회사 임직원과의 개별적 접촉금지 의무 등을 신설

(\*) 예시: 사외이사, 감사인 선임과정에 외부위원으로 참여, 법률·회계자문 제공 등

### (3)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

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(5%를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

- (現) 시가총액의 10 만분의 1 → (改) 시가총액의 만분의 1

상장법인 사업보고서등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

- (現) 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 10%~20 억원 → (改) 10 억원~20 억원

## 3. 향후계획

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돋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

## '2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(금융감독원)

### 1. 개요

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'23년말 41,212 사에서 '24년말 현재 42,118 사로 906 사 증가(2.2%↑)

'24년말 현재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,859 사로 전년(1,667 사) 대비 192 사 증가(11.5%↑)

- 이는 주기적 지정회사가 41 사 감소하였으나, 직권 지정회사가 233 사 증가한 데에 기인

### 2. 주요 내용

#### (1) '24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

(회사 유형) 주식회사 중 비상장주식회사가 38,774 사로 대부분(92.1%)을 차지하고 주권상장법인은 2,705 사(6.4%)이며, 유한회사는 639 사(1.5%)임

- 유형별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전년 대비 비상장 주식회사 827 사(2.2%↑), 주권상장법인 63 사(2.4%↑), 유한회사 16 사(2.6%↑) 모두 고르게 증가

(자산규모) 2 백억원~5 백억원이 14,260 사(33.8%), 1 백억원~2 백억원이 12,539 사(30.0%)로 절반 이상을 차지

**(결산 월)** 12 월이 40,962 사로 97.2%에 달하며, 3 월 534 사(1.3%), 6 월 283 사(0.7%), 9 월 137 사(0.3%) 등의 順

**(감사인 선임현황)** 전체 외부감사대상(42,118 사) 중 30,159 사(71.6%)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, 7,152 사(17.0%)는 변경

-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 선임 비중(37.0%)은 주기적 지정제의 영향으로 비상장사(15.6%)의 두 배를 상회

## (2) '24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

**(지정비율)** '24년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.4%로서 전년(4.0%)보다 소폭 상승(0.4%p↑)하였으나, 4% 수준을 유지

-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는 970 사이며, 지정비율은 35.9%로서 新외감법 시행('18.11 월) 이후 '21년 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'24년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30 사로 전년(571 사) 대비 41 사 감소(7.2%↓)이나, 지정제도 개선 효과로 '22년부터 3년 연속 하락

**(주기적지정 현황)** '24년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30 사로 전년(571 사) 대비 41 사 감소(7.2%↓)

- '23년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상향으로 비상장회사의 감소폭(△24 사, 44.4%↓)이 주권상장법인(△17 사, 3.3%↓)보다 2년 연속 크게 상회
- '24년 주기적지정회사 중 연속지정은 341 사(상장 317, 비상장 24)이며, 신규지정은 189 사(상장 183, 비상장 6)

**(직권지정 현황)** '24년말 현재 직권 지정회사는 1,329 사로 전년(1,096 사) 대비 233 사 증가(21.3%↑)

-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88 사로 가장 많고, 감사인 미선임(298 사), 재무기준 미달(184 사), 관리종목(155 사) 등의 順

**(회계법인별 지정 현황)** '24년 감사인 지정대상 1,859 사에 대하여 51 개 회계법인('23년 53 개 회계법인)을 지정

- 4 대 회계법인(삼일·삼정·안진·한영)이 속한 가군은 1,018 사(54.8%)로 전년(851 사, 51.0%) 대비 167 사 증가하였으며, 비중은 3.8%p 증가

## (3) 향후계획

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